

제 처-58호

## 해양오염방제 자재·약제 형식승인증서

1. 주된 영업소 :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226번길 35, 2층
2. 성 명 : (주)아이미코리아엠에스 (대표자 김지혜, 변영훈)
3. 자재·약제의 품명 : 유처리제
4. 자재·약제의 형식 및 규격 : 일반형(class one sea)
5. 자재·약제 성능시험성적서  
번 호 : A-처-2021-01호  
발급연월일 : 2021년 4월 28일

「해양환경관리법」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합니다.

2021년 5월 3일

해 양 경 찰 청



Cert. No : C-58

## **CERTIFICATE OF TYPE APPROVAL**

### 1. MANUFACTURER

- NAME : Emy Korea Medical Supplies Co.Ltd
- ADDRESS : 2F, 35 Tae-an-ro 226beon-gil,  
Hwaseong-si  
Gyeonggi-do, Republic of Korea

### 2. ARTICLE

- NAME : OIL DISPERSANT
- TYPE : class one sea

### 3. TEST REPORT

- NO : A - C - 2021 - 01
- DATE OF ISSUE : APR. 28 2021.

THIS IS TO CERTIFY THAT THE ARTICLE DESCRIBED ABOVE WA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0④ AND REGULATION 67①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.

MAY. 3. 2021.

**Korea Coast Guard**

형식승인 번호 : 제 처-58호

### 형 식 승 인 의 변 경

연 월 일	변경사항 및 조건	근 거	확 인
2021.05.03	○ 형식승인증서 최초 발급		해양경찰청장

형식승인 번호 : 제 처-58호

□ **해양오염방제 자재.약제 형식승인 관련 준수사항**

1.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오염방제 자재.약제를 제작.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,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. (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6항)
2. 형식승인증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발급받은 증서가 분실.훼손되었거나, 기재사항(주된 영업소, 성명)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 서류와 형식승인증서(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)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(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)
3. 형식승인을 받은 자재.약제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포장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)
  - 가. 형식승인번호
  - 나. 품명, 형식, 규격, 종류
  - 다.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
  - 라. 제조 년월일, 제조번호
  - 마.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, 기타
4.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. (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)
  - 가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
  - 나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
  - 다.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.약제를 판매한 경우
  - 라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